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배 의원 발의)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629호
나. 발 의 자 : 이종배 의원(찬성자 20명)
다. 발의일자 : 2024년 2월 5일
라. 회부일자 : 2024년 2월 7일

2. 제안이유

-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비, 자료제작비 등 재원 지원 중심의
현행 규정에 독서문화 활동 기회 보장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의 독서문화 향유 기회를 보장하고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지식정보취약계층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장의 조치
사항을 규정함(안 제37조2 신설).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서관법」, 「독서문화진흥법」
나.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옥심)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독서문화진흥법」(2024.5.1.시행)개정에 따라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들에게 차별 없이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 조문 검토

(1) 지식정보취약계층의 독서문화 활동기회 보장 신설(안 제37조의2)

- 안 제37조의2는 「독서문화진흥법」 제12조의2를 준용하여 시장이 지식정보취약계층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7조의2(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문화진흥) 시장은 지식정보취약계층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식정보취약계층이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독서 자료와 시설의 확충 및 제공 2. 지식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지식정보취약계층의 독서 관련 실태조사 4. 그 밖에 지식정보취약계층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조치

- 개정된 「독서문화진흥법」의 지원 대상은 제2조제3호에 따른 ‘독서소외인’인데, 이는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들을 명시한 것임.

「독서문화진흥법」
 제12조의2(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독서소외인이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독서 자료와 시설의 확충 및 제공
 2. 독서소외인을 대상으로 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독서소외인의 독서 관련 실태조사
 4. 그 밖에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조치

-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독서소외인’이 아닌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지식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되었음.

< 상위법령과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 범위 비교 >

「독서문화진흥법」	「도서관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를 말한다.	제2조(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의 주민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6. 65세 이상인 사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지식정보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마. 65세 이상의 사람 바. 문자해독이 어려운 사람 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지식정보취약계층’은 당초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2009.8.23.폐지)」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이나 이용하기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규정되었음.

- 또한, 「독서문화진흥법」은 국민에게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는 목적이 있는 반면, 「도서관법」은 기반시설로서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 등에 대한 사항들로 규정되어 있어 두 법령의 목적이 같다고 보기는 어려움.
- 이에 법령에서 쓰고 있는 대상을 자의적으로 변경하여 명시할 경우 법규범 상호 간의 충돌과 모순으로 체계정당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개정안의 지원대상을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소외인’으로 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더불어 개정안은 상위법령 내용을 재기재하고 있으므로 법령 변동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견을 드림.

< 수정 의견 >

개 정 안	수정 의견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3.(생략)</p> <p>4. <신설></p>	<p>제2조(정의) ----- -----.</p> <p>1.~3.(개정안과 같음)</p> <p>4. "독서소외인"이란 「독서문화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p>
<p>제37조의2(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문화진흥) 시장은 지식정보취약계층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p> <p>1. 지식정보취약계층이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독서 자료와 시설의 확충 및 제공</p> <p>2. 지식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p> <p>3. 지식정보취약계층의 독서 관련 실태조사</p> <p>4. 그 밖에 지식정보취약계층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조치</p>	<p>제37조의2(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진흥) 시장은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독서문화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p>

(2) 자료복사 및 출력료 증액(안 별표)

- 개정안 ‘별표 서울도서관 사용료 등 부과 기준 및 범위’(제22조 제3항 관련)는 자료복사 및 출력료 중 ‘B4사이즈’의 복사 금액을 증액(50원→70원)하고 출력은 신설하여 70원으로 규정함.

현 행			개 정 안		
[별표] 서울도서관 사용료 등 부과 기준 및 범위(제22조 제3항 관련) ○ 자료복사 및 출력료			[별표] 서울도서관 사용료 등 부과 기준 및 범위(제22조 제3항 관련) ○ 자료복사 및 출력료		
구분	용지규격	1매당 사용료(단면)	구분	용지규격	1매당 사용료(단면)
일반 복사기	A4(210mm×297mm)	30원	복사	A4(210mm×297mm)	50원
	B4(257mm×364mm)	50원		B4(257mm×364mm)	70원
일반 프린터	A4(210mm×297mm)	50원	출력	A4(210mm×297mm)	50원
				B4(257mm×364mm)	70원
○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			(현행과 같음)		

- 서울도서관은 지난해 자료실 복합기 교체로 ‘B4 사이즈’ 출력이 가능해졌고, 복사 용지와 토너 가격 상승으로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자료의 복사 및 출력료를 증액하는 것임.
- 복사 및 출력료 세입은 2013년 규정된 금액으로 최근 3년 세입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은 전년대비 66.0% 증가해 시민들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최근 3년, 서울도서관 자료복사 및 출력료 수입 현황 >

2021년	2022년	2023년
849,330원(-%)	1,506,310원(43.6%)	4,430,570원(66.0%)

- 사용료는 「지방자치법」 제153조와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를 근거로 부과하고 있으며, 국립도서관 및 타 지자체 사용료 수준에 맞춰 규정한 것으로 서울시의 잠재 수입원이자 세외 수입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국·공립 도서관 자료복사 및 출력료 현황 >

구분	도서관명	복사(후백)		출력(후백)	
		A4	B4	A4	B4
국립	국립중앙도서관	50	70	60	90
	국회도서관	50	70	60	90
공립	인천광역시 미추홀도서관	40	50	40	50
	대전광역시 한밭도서관	50	-	50	-
	세종시립도서관	40	-	40	-
	춘천시립도서관	50	100	50	100
	(대구)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	30	40	50	60
	부산도서관	50	80	50	80
	광주광역시립도서관	50	100	50	100
	전라남도립도서관	40	60	40	-
	경남대표도서관	50	-	30	50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	40	60	40	60
	경기도 선경도서관	50	50	-	-
	충청북도 청주시립도서관	40 (컬러300)	-	-	-
	충청남도 충남도서관	40	60		
	전라북도 전북도청도서관	-	-	-	-
	경상북도 경북도서관	50 양면 100 컬러 300			

< 관련 법률 >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34조(공공도서관의 이용료 등) 공공도서관이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회의실 등 사용료
3. 회원증 발급 수수료
4. 강습·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의안번호
1629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이종배 의원	'24. 2. 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요내용	<p>〈개정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비, 자료제작비 등 재원 지원 중심의 현행 규정에 독서문화 활동 기회 보장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의 독서문화 향유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 <p>〈주요 입법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정보취약계층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장의 조치 사항을 규정함(안 제37조의2 신설). ○ 서울도서관 복사 및 출력료 현실화(별표 개정) 		
추진경과	○ '24.2.5.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부 서 검 토 의 건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해당없음		
대응방안	해당없음		
상 임 위 처 리 결 과			
향 후 계 획			
담당부서	도서관정책과	팀장	김지혜(☎2133-0220)
		담당	김채은(☎2133-0228)